

「2026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문



2026년 대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

2025. 12. 22.[월]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방안을 실천하면, 정부가 기술·재정적으로 지원하는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생협력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2월 2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사업 내용

◇ 모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활동에 대해 정부가 매칭하여 비용 지원*

* 협력업체와 지역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한 안전보건 컨설팅, 교육, 캠페인, 안전보건 물품 등 자율적인 상생협력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협력업체와 지역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없음)

↳ (매칭비율) 사내 협력업체 모기업50:정부50 / 사외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모기업30:정부70

- 정부지원 예산규모: 95억원
- 지원기간: 사업대상 선정일 ~ 2026. 12. 11.(금)
- 사업대상: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과 함께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 참여방법: 모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컨소시엄 구성) 사내 협력업체(1개소) 포함 3개소 이상 필수 참여
↳ 사내 협력업체가 없는 경우 사외 협력업체 포함 3개소 이상 구성 가능
- 참여조건: 매칭지원 참여(모기업 최소 투자액 : 500만원 이상, 분담금 기준)
- 사업혜택: ① 산업안전보건 자율실천기간 부여(감독대상 미포함 최대 2년, 기획·특별감독 제외) ② ESG평가 반영(한국ESG기준원) ③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④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 수여 ⑤ 공단 재정지원사업(융자·보조금) 우대 및 각종 금융 혜택 등

사업 참여 신청

신청기간	• 2025. 12. 22.(월) ~ 2026. 1. 16.(금)
신청자격	•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을 희망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신청방법	• 모기업 소재지 관할 공단 광역본부에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이하 세부 사항을 참고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1부<첨부1>
사업대상 선정방법	• 10대 고위험 업종, 최근 3년간 업무상 사고 재해 이력 사업장 참여, 협력업체 참여수, 협력업체 매칭지원 범위, 전년도 활동 우수기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문의처: 052-703-0631, 0632, 0633(안전보건공단 안전사업부)
044-202-8924, 8925(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 정부는 안전보건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여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문화가 조성·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사업대상 선정일 ~ '26. 12. 11.(금)
- (사업규모) 정부 지원 예산액 95억원
* 참여 사업장들의 매칭지원 신청금액이 권역별 사업예산(95억)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장별 지원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

계	서울광역본부					부산광역본부				광주광역본부					
	서울 광역	강원 본부	서울 남부	서울 동부	강원 동부	부산 광역	울산 본부	경남 본부	경남 동부	광주 광역	전북 본부	전남 본부	제주 본부	전북 서부	전남 동부
9,500	1,200					1,950				1,350					

대구광역본부				인천광역본부				대전세종광역본부				경기광역본부			
대구 광역	경북 본부	대구 서부	경북 동부	인천 광역	경기 북부	고양 파주	경기 중부	대전 세종	충북 본부	충남 본부	충북 북부	경기 광역	경기 서부	경기 동부	경기 남부
1,150				950				1,500				1,400			

○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

-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함께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100인*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 신청일 기준 공식통계 근로자 또는 현재 근로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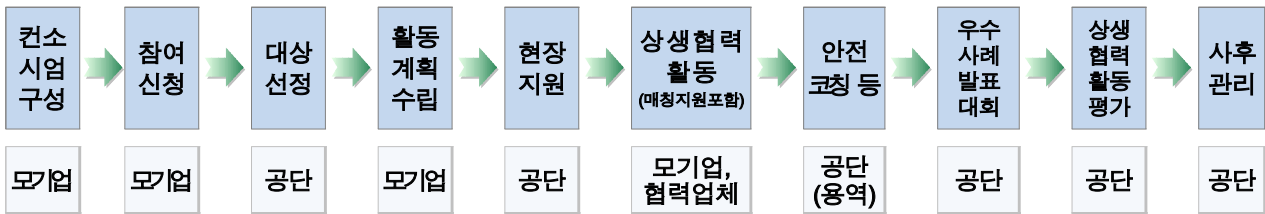
《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기준 》

- (사내협력업체) ①사업장관리번호 등록기준에 따른 소재지가 모기업 작업장 내에 있으며 연속 작업을 하는 기업, ②소재지가 모기업 작업장 외에 있으나 모기업 작업장 내 상주하며 생산 관련 일부 공정(공사제외) 업무를 하는 기업
- (사외협력업체) ①사업장관리번호 등록기준에 따른 소재지가 모기업 작업장 외 있는 기업, ②소재지가 모기업 작업장 외에 있으나 모기업 작업장 내 비상주하며 수시로 정비·유지·보수작업 등을 하는 기업
- (지역중소기업)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모기업과 협력관계 및 거래가 없는 기업으로 모기업 관할 소재지(공단 권역별)로 제한

《 사업 대상 선정 기준(첨부2) 》

- 10대 고위험 업종(중상해 재해 발생)
- 최근 3년간('23년~'25년)간 업무상 사고 재해 이력 사업장
-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다수 참여
- 참여 협력업체 매칭지원 범위
- '26년 신규참여 모기업
- '25년 상생협력활동 우수사례 발표 입상 모기업
- '25년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 추진 절차



II

사업 내용

- ❖ 모기업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약체」를 구성하여 모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지식, 기술과 경험을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에 전수
- ❖ 공단은 기업의 자율적인 상생협력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 ❖ 모기업과 정부·공단은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상생협력활동 소요 비용을 매칭 분담 지원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약체」 구성·운영 (필수)

- 컨소시엄별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약체*」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모기업 우수사례 벤치마킹의 통로로 활용

《 상생협약체 구성·운영 기준 》

- (구성) 위원장은 모기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으로 하고, 위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대표 등 전원
-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약체 등과 별도로 구성·운영하고, 최소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운영

-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의 사업주, 안전보건 관계자 등이 모기업 현장 탐방 등을 통해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지식, 기술과 경험을 전수

《 활동내용(예시) 》

- ① 위험성평가 실시 사례, ② 순회점검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③ 아차사고 발굴 및 제언제도 활용, ④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활동, ⑤ 산재예방 우수사례 공유, ⑥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안전관리 노하우, ⑦ 협력업체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등

□ **상생협력활동 현장지원(공단 → 모기업,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 모기업과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상생협력 실태를 파악하고, 상생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자율적인 상생협력활동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

* 상생협력활동 계획서는 모기업이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정부+모기업 →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 매칭지원 참여 방식

- 모기업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컨설팅 과제 또는 안전보건활동 과제는 아래 방식 중 하나로 참여

《 매칭 지원 참여 방식 및 참여 제외 대상 》

❖ 매칭지원 참여 방식

- ① 컨설팅 과제 지원만 참여(협력업체 1개소당 2천만원, 컨소시엄당 최대 2억원)
- ② 안전보건활동 과제 지원만 참여(컨소시엄당 최대 2억원)
- ③ 컨설팅 과제, 안전보건활동 과제 모두 참여(위 ①, ② 각각 충족, 컨소시엄당 최대 4억원)

❖ 매칭지원 제외 대상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기업(예: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 ③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
- ④ 국세·지방세·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
- ⑤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 대상인 기업
- ⑥ (컨설팅과제) 공단의 국고지원 위탁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당해연도)

*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근골격계질환 예방, 질식재해 예방 등

- 최소 투자액(필수조건) : 500만원 이상(모기업 분담금 기준)
- 모기업이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과제<첨부4> 및 안전보건활동 과제<첨부7> 중 세부 활동을 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 분담 지원
- ① (컨설팅 과제)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모기업이 정한 컨설팅 과제<첨부4>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 분담 지원

- (지원대상) 300인 미만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 * 단, 협력업체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모기업과 정부가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협력업체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 지원

구분	사내 협력업체	사외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매칭 분담 비율	모기업50 : 정부50	모기업30 : 정부70

- (지원한도)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1개소 당 최대 2,000만원, 컨소시엄 당 최대 2억원

《 정부지원액 산정(예시) 》

-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총 30개소가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모기업이 컨설팅<첨부4> 지원을 아래와 같이 설계하는 경우
- (예시1) 사내 협력업체 5개소, 사외 협력업체 5개소, 지역중소기업 5개소에 대해 컨설팅<첨부4>을 지원하고, 1개소당 컨설팅 비용이 각각 1,000만원씩 소요된 경우
- 컨설팅 소요 총 비용은 1억5천만원
 - : 정부지원액 9천5백만원, 모기업 분담액 5천5백만원
 - ↳ 정부지원액 9천5백만원 = 사내 5개소 정부지원액 총 2천5백만원(= 1개소당 1,000만원 x 50% x 5개소) + 사외·지역중소 총 10개소 정부지원액 총 7천만원(= 1개소당 1,000만원 x 70% x 10개소)
- (예시2) 사내 협력업체 5개소, 사외 협력업체 5개소, 지역중소기업 5개소에 대해 컨설팅<첨부4>을 지원하고
- 이들 중 총 5개소(사내 2개소, 사외 2개소, 지역 1개소)에 대해서는 1개소당 컨설팅 비용이 각각 3,000만원씩 소요되고
 - 나머지 10개소(사내 3개소, 사외 3개소, 지역 4개소)에 대해서는 1개소당 컨설팅 비용이 각각 1,500만원씩 소요된 경우
 - 컨설팅 소요 총 비용은 3억원
 - : 정부지원액 1억8천6백만원, 모기업 분담액 1억1천4백만원
 - ↳ 정부지원액 1억8천6백만원 = ①9천만원 + ②9천6백만원
 - ①컨설팅 소요비용이 1개소당 3,000만원인 경우: 총 5개소(사내 2개소, 사외 2개소, 지역 1개소)에 대한 정부지원액: 총 9천만원 = (1개소당 3,000만원 x 50% x 사내 2개소) + (1개소당 정부지원액 최대 2,000만원(3,000만원 x 70%에서 최대 한도액 x 사외·지역 3개소)
 - ②컨설팅 소요비용이 1개소당 1,500만원인 경우: 총 10개소(사내 3개소, 사외 3개소, 지역 4개소)에 대한 정부지원액: 총 9천6백만원 = (1개소당 1,500만원 x 50% x 사내 3개소) + (1개소당 1,500만원 x 70% x 사외·지역 7개소)

- (지원과제 한도) 협력업체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첨부4 참조>

* 1번~5번 과제 중복지원 불가, 단, 5번 과제의 경우 1번~4번 과제와 신청 주제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중복지원 가능

- ❖ (지원가능 예시1) 과제2(위험성평가 진단·컨설팅), 과제5(기타: 밀폐공간 위험예방)
(지원불가 예시2) 과제4(안전보건진단), 과제5(기타: 근골질환 작업개선): 보건 분야 중복

- (과제 선정방법) 모기업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 및 안전보건 역량 향상 등을 위해 컨설팅 내용 선정

《 컨설팅 과제 》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진단·컨설팅, ② 위험성평가 진단·컨설팅, ③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컨설팅, ④ 안전보건진단, ⑤ 기타(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건의·요청사항) 등
 ※ 컨설팅 과제 세부 내용은 <첨부4> 참조

- ② (안전보건활동 과제)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모기업이 정한 안전보건활동 과제<첨부7>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 분담 지원

- (지원대상) 300인 미만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 단, 협력업체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모기업과 정부가 안전보건활동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협력업체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 지원

구분	사내 협력업체	사외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매칭 분담 비율	모기업 50 : 정부 50	모기업 30 : 정부 70

* 활동과제 중 안전보건 세미나(간담회, 포럼, 상생협의체 워크숍 등) 및 안전보건 캠페인은 **협력업체 형태(사내, 사외, 지역중소기업)와 관계없이 50%(정부지원금 기준)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지급 대상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는 사내 협력업체 지원 제외

- (지원한도) 컨소시엄 당 최대 **2억원**

《 정부지원액 산정(예시) 》

■ 컨소시엄 참여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총 30개소가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 (예시1) 모기업이 안전보건 세미나(활동과제 1번)를 개최한 경우

- 컨소시엄(사내 15개소, 사외 10개소, 지역 5개소) 30개소, 미참여 협력사 10개소 총 40개소에 대하여 3,000만원을 사용 경우

: 정부지원액 1,500만원, 모기업 분담액 1,500만원

- (예시2) 모기업이 안전보건물품(활동과제 3번)을 지원한 경우

- 사내 5개소(총 4,000만원), 사외 6개소(총 4,800만원), 지역중소기업 4개소(총 3,200만원)을 지원

- 총 비용이 1억 2천만원인 경우 : 정부지원액 7,600만원*, 모기업 분담액 4,400만원

* **7,600만원** = (사내 5개소 총 4,000만원 x 50%) + (사외 6개소 총 4,800만원 x 70%) + (지역 4개소 총 3,200만원 x 70%)

- (과제 선정방법) 모기업이 아래 지원 과제 중에서 선정

《 안전보건활동 과제 》

- ① 안전보건 세미나(간담회, 포럼, 상생협의체 워크숍 등), ② 안전보건 캠페인, ③ 안전보건 물품,
④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구매품 포함), ⑤ 안전보건교육 지원(강사료 포함),
⑥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위탁비용(사내 제외), ⑦ 외국인노동자 활동지원 ⑧ 근로자 휴게시설(사내 제외)
⑨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사내 제외), ⑩ 기타(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건의·요청 사항)
※ 안전보건활동 과제 세부 내용은 <첨부7> 참조

□ 협력업체 등 안전코칭 · 사후관리

- 사업 참여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단이 용역기관을 통해 현장의
주요 공정(일부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상생협력활동
이행 상황 등 코칭

- (대상선정) 안전코칭 등은 자율참여, 고위험사업장 등 순위*에 따라 대상 선정

* ①자율신청 → ②컨설팅과제 미지원 사업장 → ③중상해 다발 고위험 사업장 順

- (사업대상)

- ① <안전코칭> 당해연도 사업 참여기업 중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② <사후관리> '23~'25년 참여기업 중 당해연도 미참여 사외·지역중소기업

❖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모기업은 공단에서 위탁한 용역기관이 해당 협력업체, 지역중
소기업을 방문하여 안전코칭 등을 지원함을 사전 안내

- (주요내용) 5대 중대재해 및 12대 핵심안전수칙, 위험성평가 등을 중점 지원

- ▶ **(5대 중대재해)** ①추락, ②끼임, ③부딪힘, ④화재·폭발, ⑤질식
▶ **(12대 핵심안전수칙)** ①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②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망 설치, ③개구부 덮개 고정 설치, ④방호덮개, 안전가드 등 방호장치 설치,
⑤정비보수 작업시 전원차단 등 잠금조치 및 안전표지 부착, ⑥작업관계자 외 출입금지
및 작업지휘자 배치, ⑦근로자 안전통로 확보 및 작업장 정리 정돈, ⑧용접시 불티 비산방지
철저 및 화재감시자 배치, ⑨소화설비 및 가연물 관리 철저, ⑩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작업 중 충분한 환기 유지, ⑪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⑫폭염 5대 기본수칙(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신고)

* 중대재해 발생 주요 업종, 원인, 유형, 기인물 등에 따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안전코칭·사후관리 참여 시 연말 모기업 상생협력활동 평가에 반영

□ 모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평가 · 우수기업 선정

- **(상생협력활동 평가)** 사업 참여 모기업 대상 협력업체 등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 우수사례 확산 노력 등*을 평가(10~11월 예정)

* 컨소시엄 참여 실적, 상생협력활동 투자 활성화, 원·하청 공동 위험성평가 등 협력업체 재해 예방 역량 향상 지원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 중대재해 감축 성과 등(평가지표 별도 공지)

- **(우수기업 선정)** 심사(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해 우수사례 확산 노력 등 상생협력활동이 우수한 모기업을 선정(12월 예정)

* 상생협력활동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 부여<첨부3 참조>

□ 매칭 컨설팅 기관 모니터링 · 평가

- 컨설팅 품질 제고를 위한 업무수행 절차 준수, 보고서 적정 여부 등 점검·확인

- **(모니터링)** 매칭 컨설팅 지원 협력업체를 방문하여 컨설팅 업무수행 절차 및 보고서 적정성 등 점검(연중 상시)

- **(현장평가)** 매칭지원 참여 컨설팅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서 품질제고 및 활동 내용을 평가(9~11월 예정)

- **(평가결과 공개)** 매칭지원 참여 컨설팅 기관 평가 결과(S~D등급)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12월 예정)

□ 기타(모기업-지역중소기업 1:1 연결짓기 지원)

- (공단)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중소기업 목록 제공(별도 제공)

- (모기업) 목록 참조 등 모기업의 자율적인 연결짓기를 통해 컨소시엄 구성(공단 제공 목록에 없는 지역중소기업도 가능)

* 컨소시엄에 지역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사업 대상 선정 기준 배점 가중<첨부2>

- 사업 대상 선정 이후 1모기업 - 1지역중소기업 결연, 공단에서 연결 지원

- 매칭지원 외 모기업 안전보건교육에 지역중소기업 안전관리 담당자 참여, 모기업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역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 노하우 전수 등 지역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가능

□ 컨설팅 수행 절차

○ (컨설팅 협약) 3자간 협약[공단(광역본부)-모기업-컨설팅 기관] 체결

* 협약 시 필요 서류는 <첨부9> 참조, 공단 부담금의 경우 최대 70%까지 선금 지급 가능

○ (컨설팅)

- (실태 컨설팅) 모기업이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문제점 및 개선대책 제시

* 컨설팅 기관은 수행일지, 단계별 산출물 및 증빙 자료를 작성하여 모기업의 확인을 받아 보관(과제별 컨설팅 보고서, 교안, 회의록 등<보고서 서식 등은 별도 제공 예정>)

- (확인 컨설팅) 실태 컨설팅에서 제시된 개선대책에 대한 이행완료 상태 점검 및 추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컨설팅

* 실태 컨설팅 및 추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재해예방 정보 제공 포함

- (교육연계) 컨설팅 수행 시 병행(실태 컨설팅 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교육)

○ (보고서 작성) 공단 제공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첨부4 참조>

○ (지원계획 변경) 컨설팅 기관은 승인된 지원계획의 변경 사항* 발생 시 모기업의 확인을 거쳐 공단(광역본부)에 변경 요청

* 협약기간 연장, 컨설팅 지원 분야, 컨설턴트 투입계획 변경 등

- 공단(광역본부)은 필요 시 소요비용(협약금액) 등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를 모기업 및 컨설팅 기관에 통보

○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컨설팅 기관은 컨설팅 완료 후 모기업의 확인을 거쳐 공단(광역본부)에 수행완료 보고서 및 수행일지(산출물 전체 포함) 제출*

* 확인 컨설팅 완료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협약기간 내)

□ 컨설팅 수행 기준 · 자격

○ **(수행기준)** ※ <첨부4> 컨설팅 매칭지원 과제 참고

①	[과제 1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과제 2번] 위험성평가 진단·컨설팅
	[과제 5번] 기타(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건의·요청사항)

- 컨설팅(실태+확인) 최대 일수는 아래 기준에 따라 수행하며, 확인 컨설팅 일수는 실태 컨설팅 일수의 50%* 범위 내 수행(2인 1조)

* (예시) 확인 컨설팅이 2.5일로 산정되는 경우 2일 수행

협력업체 근로자수	컨설팅 일수
50인 이상	최대 8일
20인 이상~50인 미만	최대 6일
20인 미만	최대 4일

※ (근로자수 산정기준) 실태 컨설팅 수행일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에 기재된 인원으로 판단<컨설팅 보고서에 관련자료 반드시 첨부>

※ 사외 협력업체의 경우 모기업이 해당 협력업체의 일부(상주) 또는 전체 대상 근로자수를 협의하여 컨설팅 수행

※ 컨설턴트 2인 1조 예외: 기술사 또는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명이 컨설팅 가능

- 컨설팅 1회(1일) 기준 투입시간은 협력업체 1개소당 5시간 이상

②	[과제 3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컨설팅
	[과제 4번] 안전보건진단

- 과제별 실시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모기업이 컨설팅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기준 협력업체당 최대 600만원]

※ 사외 협력업체의 경우 모기업이 해당 협력업체의 일부(상주) 또는 전체 대상 근로자수를 판단하여 컨설팅 수행

※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KOSHA-MS 실태 심사 또는 ISO45001 인증심사를 10월말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미완료 시 정부 지원금 지원 불가

- 컨설팅 1회(1일) 기준 투입시간은 협력업체 1개소당 5시간 이상

○ **(컨설턴트)** 『컨설턴트 등급 기준표<첨부6>』의 기준 적용

- 컨설턴트 2인 중 “고급기술자” 등급 이상 1인이 반드시 참여

※ 컨설팅 수행 세부 기준은 <첨부5> 참조

□ 주요 과업 내용

- **(컨설팅)** 컨설팅 과제 지원 분야별 세부내용<첨부4>에 따라 참여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의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 등 지도
 - * 세부 내용에 대한 매뉴얼은 지원대상 선정 이후 별도 제공 예정
- “매칭지원 계획서”에 따라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을 제시
 - * 컨설팅 과제 지원 분야별 경영층(CEO 등) 및 현장 노동자에 대한 면담(강평 포함)을 1회 이상 수행하고 그 결과를 컨설팅 보고서에 기입<필수>
 - * **(교육연계)** 컨설팅 수행 시 병행(실태 컨설팅 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개선 사항 교육)
- 매칭 컨설팅 과제 중 선택한 지원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컨설팅 수행으로 협력업체 등의 산재예방에 기여
- **(재정지원 연계)** 위험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다른 안전보건 재정사업과 연계
 - * 고위험요인 시설개선(클린), 안전동행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확산, 융자금 등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가능함을 안내(안내 리플렛 등 제공)
- **(자료보급 등 지원)**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고사망·중상해 예방 자료 제작·보급(동종·유사업종 재해사례, 아차사고 사례), 안전관리 우수사례

□ 컨설팅 수행기관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건설분야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산업안전(보건)지도사(건설안전분야 제외) 법인
-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 컨설팅 기관 간 컨소시엄(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여 가능
- 그 밖에 컨설팅 업무 수행에 적절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관
 - * 컨설턴트의 기술자격 등급이 특급기술자 이상(특급기술자, 기술사, 지도사 등)

❖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당해연도 참여 배제

- ① 공단 '25년 '민간위탁사업평가'에서 부적합등급(N등급) 기관 등 '26년 사업 참여 제한 기관
- ② 공단 '25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수행기관 평가 부적합 등급(N등급) 기관 등(계약해제·해지기관 포함) '26년 사업 참여 제한 기관
- ③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중 신청일 현재 영업(업무)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기관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컨설턴트 참여 제한

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담당 기관장/부서장/담당자의 경우,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퇴직 전 관할지역 내 모기업에 대한 컨설팅 제한

□ 사업제한 조건

- 공단(광역본부)은 아래와 같은 경우, 컨설팅 기관에 대하여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정산은 “협약서 일반조건”에 따름
 - 모기업 및 컨설팅 기관이 컨설팅 사업 수행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사실 내용 확인 후 즉시 해지)
 - ※ 상기 사유[1일(1개소) 5시간 수행 등 컨설팅 수행기준 위반포함]에 따라, 동 사업에 참여한 컨설팅 기관은 사업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사업비 정산 대상 제외)
 - 기타 “협약서 일반조건”에 따라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공단의 매칭 컨설팅 참여 협력업체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당 컨설팅 기관에 1차 경고 등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음
 - 1차 경고* 이후 시정되지 않은 경우 심의위원회(광역본부)를 통해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 * 현장 모니터링 실시 결과 사업 수행 부진, 수행 절차 이행 미흡 등에 따른 주의 필요시
- 명백하게 부당한 이유로 계약 해지된 컨설팅 기관은 향후 공단이 주관하는 사업 참여 제한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사업비 신청 및 정산(지원금 지급)

- (선금 신청) 공단 분담금의 최대 70%까지 선금 지급 가능
- (사업비 정산) 모기업이 해당 매칭지원 활동 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최종 확정 후 사업비 정산
 - ※ 컨설팅 중 휴·폐업, 소멸 협력업체에 대한 비용은 컨설팅 실적 기준 정산
 - ※ 공단의 국고지원 위탁사업과 중복 지원될 경우 지원금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IV

사업 대상 선정 등

□ 선정 기준

선정기준	세부기준	배점
① 10대 고위험 업종 참여 모기업	○ 중상해 재해(요양일수 90일 이상) 다발 상위업종 그룹별 가중치 부여	최대 10점
② 10대 고위험 업종 참여 협력업체	○ 중상해 재해(요양일수 90일 이상) 다발 고위험 업종 참여 - 컨소시엄 당 참여 범위(비율)	최대 20점
③ 최근 3년간('23~'25) 사고사망, 중상해 재해 발생 사업장 참여	○ 최근 3년간('23~'25) 사고사망, 중상해 재해 발생 사업장 참여 - 사내(최대 10점), 사외·지역중소기업(최대 20점)	최대 30점
④ 협력업체 등 참여	○ 컨소시엄당 지역중소기업, 사내외 협력업체 참여 여부	최대 20점
⑤ 협력업체 등 매칭지원	○ 참여 협력업체 등에 대한 분야별(컨설팅, 안전보건활동 과제) 지원	최대 20점
⑥ 가점	○ '26년 사업 신규 참여 모기업	10점
	○ '25년 상생협력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입상 모기업	10점
	○ '25년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10점

※ 선정 기준 세부 내용은 <첨부2> 참조

※ 자율이행 모기업은 상기 선정 기준과 관계없이 최우선 선정

□ 선정방법

- 공단(본부)에서 사업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참여 모기업(컨소시엄) 최종 선정
- **(선정통보)** 사업대상 선정 결과와 매칭지원신청서 및 지원계획서 포함 작성·제출 안내(광역본부 → 선정 모기업)
- * 상생협력활동 계획서는 매칭지원 결정 후 제출일 별도 안내 예정(3월)

□ 선정결과 발표: 2026. 1. 22.(목)

- 선정심사 후 접수·선정심사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공지 및 선정 모기업에 개별 통보
- * 공단 사정에 따라 선정 결과 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사항

-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및 매칭지원 신청서 등 사업수행 양식은 사업대상 선정 결과 발표 이후 모기업에 개별 안내 예정
- 과도한 사업비 집행(부정 집행 포함 등)에 따른 외부 사정기관 점검 시 사실관계 확인 후 공단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사업 참여 신청

☐ 참여방식

- 모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참여신청 : 모기업이 신청

- 사업 참여 신청서<첨부1>에 참여 사업장 현황을 첨부하여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5. 12. 22.(월) ~ 2026. 1. 16.(금)☐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모기업(사업장 단위) 소재지 관할 광역본부(상생협력사업 담당부서)
* 공단 광역본부 관할구역은 <첨부8> 참조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서울광역본부	02-6711-2963	(우 04512)
	yoona.hur@kosha.or.kr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우리빌딩 7층
부산광역본부	051-520-0536	(우 46274)
	harmony051@kosha.or.kr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4층
광주광역본부	062-949-8745	(우 62364)
	sangseng@kosha.or.kr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무역회관 9층
대구광역본부	053-609-0563	(우 41939)
	ssd9@kosha.or.kr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1층
인천광역본부	032-5100-603	(우 21417)
	sijung2@kosha.or.kr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대전세종광역본부	042-620-5692~3	(우 34122)
	ssds@kosha.or.kr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2층
경기광역본부	031-259-7126	(우 16229)
	tkdtod2025@kosha.or.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3층

- (문의처) 상기 접수처 및 공단 본부(안전사업부) *(전화) 052-7030-631, 632, 633

매칭지원 신청

☐ 신청방법 :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후 모기업이 신청

- 사업대상 선정 후 매칭지원 과제에 대한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상생협력활동계획서는 매칭지원 결정 후 제출일 별도 안내 예정<3월>)

* 사업 참여 신청 시 제출한 컨설팅 과제에 추가하여 컨설팅 과제 변경 가능

☐ 신청기간 : 사업대상 선정일 이후(수시)

- <첨부> 1.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사업 대상 선정 기준 1부.
3. 사업 인센티브 1부.
4. 컨설팅 매칭지원 과제 및 세부내용 1부.
5. 매칭지원 컨설팅 지원 기준 1부.
6. 매칭지원 컨설턴트 등급 및 지원 단가 기준표 1부.
7. 안전보건활동 과제 세부내용 1부.
8. 공단 일선기관(광역본부) 소재지 및 관할구역 1부.
9. 사업 분야별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1부.

※ <참고> 사업 참여 희망 지역중소기업 목록 제공(공고일 이후 예정)

<첨부 1> 사업 참여 신청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근로자수 명
상생협력사업 담당자	(부서명) (성명)	전 화 번 호 (FAX)	(- -) (- -)
	(핸드폰) (이메일)		
소재지	□□□□□□		
협력업체 참여현황	총 계 : _____개사 (사내 개사, 사외 개사, 지역기업 개사)		
매칭 비용 지원 계획	총 계 (①+②)		총 _____백만원 - 모기업 분담금 백만원, 정부지원금(VAT포함) 백만원] - 지원 기업현황 : 총 _____개소 (①컨설팅 개소, ②안전보건활동 개소)
	① 컨설팅 과제	계획 금액	총 _____백만원 [모기업 분담금 백만원, 정부지원금(VAT포함) 백만원]
		지원 업체	총 _____개소 (사내 개소, 사외 개소, 지역기업 개소)
	② 안전 보건 활동 과제	계획 금액	총 _____백만원 [모기업 분담금 백만원, 정부지원금(VAT포함) 백만원]
		지원 업체	총 _____개소 (사내 개소, 사외 개소, 지역기업 개소)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2. 참여 사업장 현황(세부) 1부.	
우리 사업장은 「2026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귀중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기업의 선정 및 사업평가, 컨설팅 수행 업무, 성과관리 업무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모기업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소재지, 협력업체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소재지, 모기업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직장, 휴대폰), 이메일 주소
선택항목	소속, 직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년)

4. 상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신청 등 절차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제3자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 수집목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제공목적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제공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 이용기간 : 1년
-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모기업 대표 성명: (인/서명)

상생협력 담당자 성명: (인/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광역본부장 귀하

참여 사업장 현황(세부)

※ 엑셀 양식으로 작성

[illegible]

※ 협력업체 정보(담당자 개인정보 포함)의 경우 모기업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동의 확인 후 제출

《 컨설팅 과제 》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② 위험성평가 진단·컨설팅
③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컨설팅, ④ 안전보건진단, ⑤ 기타(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건의·요청사항)

《 안전보건활동 과제 》

- ① 안전보건 세미나(간담회, 포럼, 상생협의체 워크숍 등), ② 안전보건 캠페인, ③ 안전보건 물품, ④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구매품 포함), ⑤ 안전보건 교육지원(강사료 포함), ⑥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위탁비용, ⑦ 외국인노동자 활동지원, ⑧ 근로자 휴게시설, ⑨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⑩ 기타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건의·요청 사항)

<첨부 2> 사업 대상 선정 기준

'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상 선정 기준

※ 자율이행 모기업은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최우선선정

선 정 항 목					배점	비 고
총 합					100점	
1. 공통					100점	
<고위험 사업장 참여도>					60점	
① 10대 고위험 업종 참여 모기업					최대 10점	• 중상해 재해* 다발 상위업종 그룹별** 가중치 부여 * 요양일수 90일 이상 ** <첨부2-1> 참조 • 선정 전월 기준 공식통계 기준
고위험 그룹	1그룹 (재해다발 상위 5위내)	2그룹 (재해다발 상위 10위내)	3그룹 (재해다발 상위 10위외)			
점수	10점	8점	6점			
② 10대 고위험 업종 참여 협력업체					최대 20점	
컨설팅당 참여범위	70% 이상	70% 미만~ 50% 이상	50% 미만~ 30% 이상	30% 미만		
점수	20점	15점	10점	5점		
③ 최근 3년간(23~25) 사고사망, 중상해 재해 발생 사업장 참여 - (사내) 재해 발생 사업장 1개소 이상 참여한 경우					최대 10점	
참여개소	업무상 사고사망(최대 5점)		중상해 재해(최대 5점)			
점수	1개소당 5점		1개소당 5점			
- (사외·지역) 재해 발생 사업장 1개소 이상 참여한 경우					최대 20점	
참여개소	업무상 사고사망(최대 10점)		중상해 재해(최대 10점)			
점수	1개소당 10점		1개소당 5점			
<협력업체 및 매칭지원 참여도>					40점	
④ 협력업체 등 참여					최대 20점	
협력형태	지역중소기업	사내	사외			
점수	1개소당 5점 (최대 10점)	1개소당 1점	1개소당 2점			
⑤ 협력업체 등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최대 20점	
범위	컨설팅 및 안전보건활동 과제 동시 참여	컨설팅 과제만 참여	안전보건활동 과제만 참여			
점수	20점	10점	10점			

2. 가점		
① '26년 신규 참여 모기업	10점	• 공단본부 일괄 제공
② '25년 상생협력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입상 모기업	10점	
③ '25년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10점	

※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②→①→③→④)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
 ※ 상기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으나 기준에 미달하여 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참여 취소
 ※ 지역별 1차 선정결과를 반영하되 특정기업 편중 사업추진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 결정으로 대상 사업장 조정심사
 ※ 선정참여 사업장의 경우 재원 범위 내 후순위 지원(지원순위: 자율신청→선정참여)

<첨부 2-1> 10대 고위험 업종 현황

모기업 · 협력업체 10대 고위험 업종

최근 3년간 중상해 재해(요양일수 90일 이상) 상위그룹				
재해다발 상위그룹 (산재보험 업종)		제조업	제조업 외	건설업
1 그룹	1순위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음식 및 숙박업	건축건설공사
	2순위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도로신설공사
	3순위	자동차 부분품 제조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계장치공사
	4순위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기타건설공사
	5순위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	건물 등의 종합 관리사업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2 그룹	6순위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	구역화물운수업	터널신설공사
	7순위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8순위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	육상화물취급업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
	9순위	기타 각종 제조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10순위	기타 식료품 제조업	운수 부대서비스업	건설기계관리사업
3 그룹	상기 업종 외			

<첨부 3> 사업 인센티브

‘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인센티브

등급	등급별 혜택	관련근거	적용 시기/기간	적용 대상	
				모기업	협력체
우수기업 및 자율이행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 수여	사업추진계획	선정 다음연도 1년간	○	
	❖ 산업안전보건 자율실천기간 부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대상 미포함(기획·특별감독 제외)	고용노동부 지침 (감독지침 등)	참여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1년간	○	○
	❖ 기업 우수 사례 홍보지원	사업추진계획	참여 다음연도 1년간	○	포함 가능
	❖ 정부 동반성장 지수 평가 가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공정위)	참여 다음연도 1년간	○	
참여기업	❖ ESG평가 점수 반영 (사회(S)평가 분류 중 ‘공급망 위험관리’ 일부 문항)	ESG평가 제출가이드 (한국ESG기준원)	참여 당해연도 (‘25년 활동기준)	○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우대	공단지침	참여 당해연도	×	○
	❖ 산재예방시설 용자지원 우대				
	❖ 정부포상(산재예방 유공) 우대	고용노동부공단지침	참여 다음연도	○	○
	❖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여신 혜택 부여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실질 금리 인하 효과) - 보증료율 감면 : 기업별 보증료율 0.2%p 감면	- 공단-기술보증기금 업무협약 (2019.5.14.)	참여 당해연도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및 지원한도 상향(60억→100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 기준에 따름	- 공단-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업무협약 (2019.9.12.)		○	○
	❖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보증 혜택 (중소·중견 기업) -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 한도 1.5배 우대 및 보증(험)료 20% 할인	- 공단-무역보험공사 업무협약 (2021.11.19.)		○	○
	❖ 산업안전보건 자율실천기간 부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대상 미포함(기획·특별감독 제외)	고용노동부 지침 (감독지침 등)		○	○
	❖ 업무담당자 표창(우선 선정)	고용노동부공단지침	-	○	○

※ 선정참여 모기업 컨소시엄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인센티브 제외

<첨부 4> 컨설팅 과제 매칭지원 세부내용

컨설팅 매칭지원 과제(필수항목)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체크리스트 세부사항 준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7요소

- * ① 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③ 경영자리더십 ④ 근로자 참여 ⑤ 비상조치
⑥ 도급관리 ⑦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 재해발생 및 위험공정 일부(모기업 선정)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제공<필수>

2. 위험성평가 진단·컨설팅(「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2-1. 사내 집중형(원·하청 공동 위험성평가)

2-2. 사외 집중형(일반형)

- ①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방법 등
③ 위험성평가 적정성에 대한 현장 확인, ④ 위험성평가 연계 TBM 활용법 등

※ 2-1. 사내 집중형(원·하청 공동 위험성평가)의 경우 모기업 담당자 필수 참석*

- * (위험성평가 필수참여 5단계) ① 사전 준비회의,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결정,
④ 감소대책 수립, ⑤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공유·검토

※ 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현장점검과 절차별 진단 및 대책을 제시

※ 전 공정(사고발생 공정포함)의 30% 이상(모기업 선정)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 제공<필수>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컨설팅(매뉴얼/절차서/지침서 등 제공 조건)

- (KOSHA-MS) ① 경영자리더십, ② 근로자 참여, ③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④ 비상조치계획 수립, ⑤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⑥ 평가 및 개선 등 인증 기준 요구사항 반드시 포함
- (ISO45001) ① 조직상황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파악, ② 리더십 및 근로자 참여 확보, ③ 위험 및 기회관리 계획 수립, ④ 운영 관리 및 지원 시스템 구축, ⑤ 성과평가 및 지속개선 등 인증기준 요구사항 반드시 포함

※ ▲(지원조건)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KOSHA-MS 실태심사 또는 ISO45001 인증심사를 10월말까지 완료

※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기준 협력업체 당 최대 600만원

4. 안전보건진단 ※ 공단 진단업무 가이드라인 참고

- ① 주제 :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제시
② 지원분야 : 안전, 보건 ③ 대상 : 사업 참여 사외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포함)
④ 중복지원 제외 : ① 안전 분야 또는 체계 구축 컨설팅 과제 참여 시 → 안전진단 참여 불가
② 보건 분야 컨설팅과제 참여 시 → 보건진단 참여 불가
⑤ 진단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건설분야 제외) *공단 제외
⑥ 매칭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 안전보건진단 추진계획(내용, 일정, 참여 진단기관 등 자율양식)
※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기준 협력업체 당 최대 600만원

5. 기타(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건의·요청사항)

- 협의체를 통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율 주제 지원(협력업체 요구 시)

※ (증빙제출) 협력업체 요구사항이 기록된 회의록 등 제출 시 승인(권역별 심사위원회)

※ (과제 1,2,5번) 공단 제공 양식 준용, 과제별 보고서 작성 시 개선할 점, 잘된 점, 우수활동 사례 등 반드시 포함, (과제 3,4번) 기관 자율양식 활용

※ 과제 3,4번은 MD 및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등을 참고하여 매칭지원 계획서(견적서) 제출

※ (중복지원 배제) 과제 1번~5번 중복지원 불가, <단 5번 과제는 1~4번 과제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중복지원 가능>

<첨부 5> 매칭지원 컨설팅 지원 기준

매칭지원 컨설팅 지원 기준

※ 모기업과 컨설팅기관이 협의하여 협력업체 업종과 수준을 고려, 지원 분야 및 컨설턴트 투입 규모, 수행기간 등 자율 설계

컨설팅 절차별 컨설턴트 투입계획 수립 (총 소요비용 산정)		
① 실태 컨설팅	컨설턴트 투입	○ 등급 ^① × 인원(2인1조) × 일수 ^② (최대5일) ※ 다만, 컨설턴트가 "기술사 또는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명 투입 가능
② 확인 컨설팅	컨설턴트 투입	○ 등급 × 인원(2인1조) × 일수(최대3일) ※ 다만, 컨설턴트가 "기술사 또는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명 투입 가능

※ 협력업체 당 총 컨설팅 소요비용은 컨설팅 과제별 컨설턴트 투입일수 등을 확인하여 산정
- 컨설팅 소요비용 = 인원 × 투입일수* × 투입컨설턴트 등급별 단가
* 최소 일수는 아래 최대 일수(수행기준)를 참고하여 모기업과 컨설팅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 투입계획 수립 기준

① 컨설팅 1회 당 『컨설턴트 등급 기준표』의 "고급기술자" 등급 이상 1인 필수 참여
② 컨설팅 1회(1일) 컨설턴트 투입시간 : 5시간 기준(1개소)

※ 전체 컨설팅 수행기간은 1월 ~ 10월까지 약 10개월 한도 내 설정(10월말까지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 시 공단 재정지원 사업과 적극 연계

※ (교육연계) 컨설팅 추진 시 병행 실시(실태 컨설팅 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을 교육)

※ (컨설팅 수행기준)

↳ 사외 협력업체의 경우 모기업이 해당 협력업체의 일부(상주) 또는 전체 대상 근로자수를 판단하여 컨설팅 수행

① <과제 1,2,5번의 경우>

※ 컨설팅(실태+확인)의 최대 일수는 아래 기준에 따라 수행하며, 확인 컨설팅 일수는 실태 컨설팅 일수의 50%* 범위 내 수행(2인 1조) *(예시) 확인 컨설팅이 2.5일로 산정되는 경우 2일 수행

협력업체 근로자수	컨설팅 일수
50인 이상	최대 8일
20인 이상~50인 미만	최대 6일
20인 미만	최대 4일

* (근로자수 산정기준) 실태 컨설팅 수행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에 기재된 인원으로 판단<컨설팅 보고서에 관련자료 반드시 첨부>

* (보고서 작성) 공단 제공 양식을 참고하여 항목별 필수내용 및 현장의 잘된 점, 개선할 점, 우수활동 사례 등은 반드시 포함

② <과제 3,4번의 경우> 과제별 수행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모기업과 컨설팅 기관이 협의하여 자율 선정

*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기준 협력업체 당 최대 600만원

* (보고서 작성) 컨설팅 기관의 자율양식을 활용하여 주제별 내용을 충실히 작성

* (지원조건)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KOSHA-MS 실태심사 또는 ISO45001 인증심사를 10월말까지 완료

<첨부 6> 매칭지원 컨설턴트 등급 및 지원 단가 기준표

매칭지원 컨설턴트 등급 및 지원 단가 기준표('25년 기준)

- ※ 아래 기준 단가는 '26년 적용되는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공표 시 변경 예정
 ※ 아래 구분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또는 '학력 및 경험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됨
 ※ '건설업 협력업체'의 경우 건설분야 자격 또는 학력을 소지한 컨설턴트에 한하여 참여 가능

구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지원단가(원) (부가세 포함)
현장 점검 및 컨설팅	기술사	· 관련분야 기술사*·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 *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인간공학 기술사 ** 산업안전지도사(안전분야), 산업보건지도사		860,000
	특급 기술자	· 해당 기술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3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9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12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한 날로부터 15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700,000
	고급 기술자	· 해당 기술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7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6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9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한 날로부터 12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600,000
	중급 기술자	· 해당 기술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7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6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한 날로부터 9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480,000
	초급 기술자	· 해당 기술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기술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430,000

<첨부 7> 안전보건활동 과제 세부내용

안전보건활동 과제 세부내용

1. 안전보건 세미나(간담회, 포럼,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워크숍 등)

- 1) 주제 : ① 매칭 컨설팅 과제(5개) 관련, ②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등
- 2) 지원대상 : 세미나에 참여한 모기업·협력업체 CEO, 근로자 등 전부(컨소시엄 참여 협력업체 등 반드시 포함)
- 3) 예산지원 범위 : ① 장소 임차료, ② 강사료(여비 포함), ③ 안전보건 홍보물(참석자 당 1개), ④ 세미나 물품(현수막, 발표용 프로젝트 일체<임차>, 다과, 필기류 등) 등
- 4) 지원비율 : 협력 형태에 상관없이 해당 항목 총 소요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금 기준>

2. 안전보건 캠페인

- 1) 주제: ① 매칭 컨설팅 과제(5개) 관련, ② 안전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관련 등
- 2) 지원대상 : 캠페인에 참여한 모기업·협력업체 CEO, 근로자 등 전부(컨소시엄 참여 협력업체 등 반드시 포함)
- 3) 예산지원 범위: 캠페인 필요 물품(현수막, 피켓 등) 등
- 4) 지원비율: 협력 형태에 상관없이 해당 항목 총 소요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금 기준>

3. 안전보건 물품

《 지원 일반조건 》

- ▶ 안전보건 물품이 협력업체 소유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스마트·AI형태 포함 지원 가능)
- ▶ 모기업의 시설, 설비 또는 감시용 목적 등의 안전보건 물품 지원 불가*
* (예시) 사내 협력업체의 작업 상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모기업 건물 벽면에 설치한 AI카메라
- ▶ 생산 및 작업관련 기계·설비는 지원 불가(지게차, 고소작업대, 동력식 컨베이어 등)
- ▶ 안전장치 등 지원 시 기계·설비의 소유가 협력업체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 (지원품목)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인정하는 품목

[가능품목 예시]

- 1)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절삭베임장갑, 방독마스크, 보호복, 보안경, 귀마개 등
*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지급 대상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는 사내 협력업체 지원 제외
- 2) 측정장비: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등
- 3) 끼임방지: 산업용로봇 등 안전장치, 잠금장치(LOTO-Lock Out, Tag Out) 등
- 4) 추락방지: 추락방지용 안전매트, 안전대부착설비, K-사다리 등
- 5) 충돌방지: 건설기계 또는 화물자동차의 충돌 방지용 후방 센서 등
- 6) 폭염예방설비 : 냉풍기,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등
- 7) 기타 : 비상용 응급구조키트(구급함), 자동제세동기(AED) 등

나. (지원대상) 사업 참여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포함) 근로자(모기업 지원 제외)

다. (지원결정) 협력업체 지원품목·수량 등은 권역별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신청 품목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적정성을 검토하고 결정(중복지원 제외 필수 확인)

4.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 1) 주제 : ① 매칭 컨설팅 과제(5개) 관련, ②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등
- 2) 지원대상 : 사업 참여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 3) 제작범위 : 사업 참여 협력업체 규모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모기업 지원 제외)
- 4) 예산지원범위 : 자료 제작·배포 비용 등(구매품 지원 가능)

5. 안전보건교육 지원

- 1) 주제 : ① 매칭 컨설팅 과제(5개) 관련, ②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등(내부 집합교육 포함)
* 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사업주 의무교육은 지원 제외(예시: 근로자 정기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등)
- 2) 지원대상 : 사업 참여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포함) 대표 및 근로자(모기업 지원 제외)
- 3) 예산지원범위 : ① 교육비, ② 교육출장 여비, ③ 내부 집합교육 시 강사료*(여비포함) 등
* 단, 외부 강사료 지원의 경우 모기업 소속 내부 직원은 지원 불가

6.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위탁비용<사내협력업체 지원불가>

- 1) 업무범위 : 전문기관* 관리규정 제4조[위탁업무]①항~⑤항(고용노동부예규 제231호 준용, 시행 2025.1.1.)
* 계약일 기준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
- 2) 지원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비대상 사업장 중 사업 참여 사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 3) 예산 지원범위 : 위탁계약일~10월말까지의 활동 내용 정산

7. 외국인노동자 활동지원

- 1) 지원대상 :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참여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포함) * 모기업 지원 제외
- 2) 예산지원범위 : ①안전보건자료 번역 비용, ②통역비, ③외국인노동자 전용 교육시스템 운용 비용 (설치,구독료 등) 등

8. 근로자 휴게시설<사내 협력업체 지원불가>

- 1) 지원종류 : 컨테이너 하우스(조립식 포함), 휴게시설·비품(냉·난방기, 쇼파, 테이블)
* 모기업의 구매 제품이 조달청 등록(유사)제품 대비 과하게 높은 경우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지원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를 충족하여야 함
- 2) 지원대상 : 사업 참여 사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 3) 매칭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 설치계획(설치 예정 장소 명단 및 주소, 내부 구성 품목 등 자율 양식)
- 지원기업의 공정별 근로자수 현황

9.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사내 협력업체 지원불가>

- 1) 지원대상* : 사업 참여 사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별표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에 한함
- 2) 측정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10. 기타(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건의 요청사항 포함)

- 1) 지원대상 : 사업 참여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 2) 지원조건 : 모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협력업체 건의 요청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해당 내용이 작성된 협의체 회의록 등
- 3) 지원 결정 : 공단의 사전 승인 후 지원 가능

- ▲ 심사위원회를 거쳐 예산지원 범위 및 사업비 정산 제출 자료 등 통보(공단→신청 모기업)
- ▲ 1~9번 활동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관련 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항목)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 지원 가능

※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시, 승인내역에 따른 추진 결과 및 예산관련 증빙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교육 이수증, 교육비 납부 영수증 등) 제출

- 단 안전보건 물품의 경우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시 해당 협력업체에 지급한 물품 사진 및 수령증 제출(일부 품목은 작업공정별 근로자 배치 현황, 공정개요 설명서 등 관련자료 포함 제출)

<첨부 8> 공단 일선기관(광역본부 등) 소재지 및 관할구역

공단 일선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

기 관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지방노동관서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서초구·강남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 및 은평구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서울서부지청
강원지역본부	춘 천 시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및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강원·원주지청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구·강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 및 동작구	서울남부·서울관악지청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 및 성북구	서울동부·서울북부지청
강원동부지사	강 릉 시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	태백·강릉지청, 영월출장소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부·부산북부지청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산지청
경남지역본부	창 원 시	경상남도(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창원·진주·통영지청
경남동부지사	양 산 시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양산지청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광주지방노동청
전북지역본부	전 주 시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 및 무주군	전주지청
전남지역본부	목 포 시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 및 신안군	목포지청
제주지역본부	제 주 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과)
전북서부지사	군 산 시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군산시 및 부안군·고창군	익산·군산지청
전남동부지사	여 수 시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및 고흥군·보성군	여수지청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북구·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 및 청도군, 군위군	대구지방노동청
경북지역본부	구 미 시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안동시·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및 봉화군·예천군·의성군·영양군·청송군	구미·영주·안동지청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고령군 및 성주군	대구서부지청
경북동부지사	포 향 시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 및 영덕군·울릉군·울진군	포항지청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부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경기북부지사	의 정 부 시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의정부지청
경기중부지사	부 천 시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부천지청
고양파주지사	고 양 시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고양지청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보령시 및 금산군·홍성군·서천군·부여군·청양군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
충북지역본부	청 주 시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옥천군 및 영동군	청주지청
충남지역본부	천 안 시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서산시 및 예산군·태안군	천안지청, 서산출장소
충북북부지사	충 주 시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 및 단양군·음성군	충주지청
경기광역본부	수 원 시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	경기지청
경기서부지사	안 산 시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 및 시흥시	안양·안산지청
경기동부지사	성 남 시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및 양평군	성남지청
경기남부지사	평 택 시	경기도 평택시·안성시·오산시	평택지청

<첨부 9> 사업 분야별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상생협력활동 현장지원 추진 절차별 수행업무

구 분	수 행 업 무
① 사업 공고, 설명회 (공단)	- 인터넷 사이트 등 매체 공지 - 공단,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단체 홈페이지 모집공고 - 사업 대상(기업) 설명회 개최(광역권역별)
② 참여신청 (모기업)	- 사업 참여신청 (접수 : 광역본부별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참여신청서(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제출
③ 사업대상 선정 (공단)	(1차) 광역본부별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접수 부여 후 공단 본부에 보고 (2차)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장 최종 확정 - 지역별 1차 선정결과를 반영하되, 특정기업의 편중,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대상 사업장 조정·심의 (선정 통보) 광역본부별 사업대상 선정 및 매칭지원 신청 및 계획서 작성제출 안내
④ 매칭지원 신청·결정 (모기업→공단)	-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매칭지원* 실시 - 소요비용을 일정비율로 분담 : 사내(50%^{정부}:50%^{모기업}), 사외·지역(70%^{정부}:30%^{모기업}) * ① 컨설팅 과제, ② 안전보건활동 과제
⑤ 상생협력활동계획 작성·제출	- 사업대상 선정 모기업은 컨소시엄 참여 협력업체와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수립 및 제출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자가진단 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⑥ 현장지원(공단)	- 모기업에서 제출한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 사전검토 및 현장진단을 통한 수행계획서 보완 및 개선 요구(4~6월) - 수행계획서 보완 및 확정(모기업, 6월 말까지)
⑦ 안전코칭(위탁)	- 참여 협력업체(사외·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코칭 실시(5~10월) - 해당 기업의 작업공정(일부공정)에 대한 안전코칭 및 상생협력활동 중간 점검
⑧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행 모니터링(공단)	- 참여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행 모니터링(9~10월) -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확인 대상 무작위 선정 및 위험성평가 실행 중심으로 확인
⑨ 모기업 상생협력 활동평가	(추진실적 제출)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 추진실적 및 성과측정 결과(목표 달성도, 10월말) (활동평가) 모기업의 상생협력활동 활동과 노력도를 평가(10~11월)
⑩ 우수기업 선정 (공단)	우수사례 발표대회, 상생협력활동 수준 확인 등을 통한 우수기업 선정(12월)
⑪ 사후관리 (공단)	- 우수기업에 대하여 선정 유효 기간 중 주기적 실태 점검(선정 다음 연도부터 매 1년)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과 이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수준 유지 여부 확인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자율이행 참여그룹의 경우, 상기 추진 절차 중 매칭지원 및 활동평가만 실시함

상생협력활동 매칭 컨설팅 지원 추진절차별 수행업무

구 분	수 행 업 무
① 사업 공고, 설명회 (공단)	○ 인터넷 사이트 등 매체 공지 - 공단,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단체 홈페이지 모집공고 ○ 사업 대상(기업, 컨설팅 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광역권역별)
▼	
② 컨설팅기관 풀 (Pool) 구성 (공단)	○ 사업공고 시 컨설팅기관 풀(Pool) 구성 현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신청 단계부터 컨설팅 기관 관련 정보를 조기 제공 ○ 기본 등록(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외 사업 참여 희망 컨설팅 기관 수시 등록
▼	
③ 지원계획 수립 (모기업)	○ 모기업이 컨설팅 기관을 자율 선정 → 지원계획서 작성 - 지원분야 선정 및 컨설턴트 투입 규모, 소요비용 등 자율 설계
▼	
④ 참여 신청 (모기업)	○ 사업 참여신청(접수 : 광역본부별 방문, 우편 또는 E-mail접수) - 참여신청서 및 지원계획서 제출(상생협력활동 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⑤ 지원기업 선정 (공단)	○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계획 승인 - 지원기업, 컨설턴트 등급 적격 여부, 수행 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 - 신청서(지원계획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심의·선정
▼	
⑥ 협약체결 및 착수금(선금)지급 (요청시)	○ 3자(공단-모기업-컨설팅기관) 간 협약서 작성 ○ 공단 분담금의 최대 70%까지 착수금(선금) 지급 가능 - 공단 → 컨설팅 기관 입금
▼	
⑦ 컨설팅 수행 (컨설팅기관)	○ 착수확인서 제출, 지원계획에 따른 수행일지 작성 ○ 지원계획 변경 사항 보고(필요시)
▼	
⑧ 수행완료 확인 (공단)	○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 모기업, 컨설팅 기관 → 공단 - 확인 컨설팅 실시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협약기간 내 제출) ○ 수행완료 보고서 확인 : 공단(심사위원회) - 지원계획과 수행내용 일치 여부, 수행 충실성, 지원성과 등 확인 ○ 확인결과에 따라 공단 및 모기업 분담금(잔금) 지급
▼	
⑨ 분담금(잔금) 지급 (공단, 모기업)	○ 확인결과 통보 : 공단 → 모기업, 컨설팅 기관 ○ 분담금(잔금) 지급 요청 : 컨설팅기관 → 공단, 모기업 - 지급요청일로부터 근무일기준 10일 이내 컨설팅기관에 확정 분담금을 지급
▼	
⑩ 성과분석 (공단)	○ 사업 효과성 분석, 우수사례 발굴 ○ 참여기업(모기업, 지원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매칭지원 관리 위탁기관)

※ 절차별 세부내용은 “매칭지원 운영 매뉴얼(추후 제공)”에 따라 수행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사업 추진절차별 제출서류

구 분	대 상	제출서류
① 컨설팅기관 풀 (Pool) 구성	공단	수시등록 희망 기관: 사업자 등록증, 컨설팅기관 등록 신청서, 컨설턴트 등록현황, 개인정보 동의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② 매칭컨설팅 지원 신청	모기업, 컨설팅 기관	1. 매칭 컨설팅 지원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컨설팅 기관 현황, 상생협력사업 참여 현황 2. 매칭컨설팅 지원 계획서 1부
▼		
③ 지원기업 선정 (협력업체 등)	공단(심사위원회)	지원계획 심사표,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확인서, 확인지침 준수 각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		
④ 협약체결 및 착수금(선금)지급 (요청시)	컨설팅 기관, 모기업, 공단	1. 컨설팅기관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인감증명서(사용 인감계), 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수입인지 2만원(협약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 모기업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3. 공단, 모기업 착수금(선금) 입금확인서(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
▼		
⑤ 컨설팅 수행	컨설팅 기관	1. 컨설팅 착수확인서 2. 수행일지, 보고서 및 증빙자료(필요시 수행사진 등) 3. 컨설팅 지원계획 변경요청서(지원계획 변경 시)
▼		
⑥ 컨설팅 완료	컨설팅 기관	수행완료 보고서 및 제출 공문, 완료 확인서, 수행일지, 정산자료 등
▼		
⑦ 수행완료 확인	공단	활동완료 자료, 계산서, 정산관련 증빙자료 (심사위원회 미실시)
▼		
⑧ 공단, 모기업 분담금 지급 신청	컨설팅 기관	정산금 지급 요청서, 입금통장 사본, 세금계산서(청구용),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